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63호 2018. 6. 11(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5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62호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권한대행 부 구 청 장 하 명 국

2018년 6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된자가”를 “된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추정가격”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서의장”을 “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상이한”을 “다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배정범위”를 “배정 범위”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반환”을 “환급”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나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실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1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 각”을 “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8조제2호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18조제2항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출납폐쇄일전”을 “출납폐쇄일 전”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매분기말”을 “매분기 말”로 한다.

제132조 중 “경과후”를 “경과 후”로 한다.

제135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5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01호서식)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6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8-75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6.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가. 단독주택용지(A-2 용도) : 획지분할가능선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2	77-1	4,438.9	1	292.0	5획지로 분할	A-2	77-1	4,438.9	1	292.0	5획지로 분할
			2	3,065.8					2	3,065.8	
			3-1	541.1					3-1	541.1	
			3-2	540.0					3-2	540.0	

※ 획지분할가능선 변경은 지형도면 참조

○ 단독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77-1	2	획지분할가능선 변경	적정규모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6.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원범위를 넓히고,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기 진작 방안 마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원 범위 확대 및 제한 사유 삭제
-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 정립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07. 0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093,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원범위를 넓히고,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기 진작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원 범위 확대 및 제한 사유 삭제
-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 정립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학생중”을 “고등학생 중”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균 7등급 이내인 재학생. 다만, 평균등급은 각 과목의 석차등급에 단위 수를 곱하여 합산한 후, 해당 과목별 단위 수의 합계로 나눈 등급으로 할 것.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입생은 진단평가 또는 반 편성고사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90 이내인 사람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 단위”를 “구 단위(지방자치단체)”로, “3위내”를 “3위 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 한 명에 한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중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를 “학교장에게 이중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매 학기 개시(開始)”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이 어려운 통장(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낮은 순서)
2. 장기근속통장
3. 통장 재직기간 중 최근 3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제4조제2항 중 “선발함에 있어서”를 “선발할 때”로, “동간”을 “동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년간”을 “연간”으로, “15%”를 “15퍼센트”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학기개시후”를 “학기 개시 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시”를 “한꺼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을 “그 직에서 위촉 해제가 되었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장학금지급”을 “장학금 지급”으로, “구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인천광역시 서구 장학기금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u>고등학생중</u>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한다.</p>	<p>제1조(목적) ----- ---- <u>고등학생 중</u> ----- ----- ----- <u>필요</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u>어느하나</u>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 ----- ----- -- <u>어느 하나</u>----- -----.</p>
<p>1. <u>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 중 5등급 이상이 전체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재학생.</u> 다만, 신입생은 진단평가 또는 반 편성고사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p>	<p>1. <u>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균 7등급 이내인 재학생.</u> 다만, <u>평균등급은 각 과목의 석차등급에 단위수를 곱하여 합산한 후, 해당 과목별 단위 수의 합계로 나눈 등급으로 할 것.</u></p>
<p><신 설></p>	<p>2. <u>신입생은 진단평가 또는 반 편성고사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90 이내인 사람</u></p>
<p>2. <u>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내</u></p>	<p>3. ----- ----- <u>구 단위(지방자치단체) -- 3</u></p>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신 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 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위 내 -----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 한 명에 한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추천) -----

-----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선발) ① -----

----- 학교장에게 이중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매 학기 개시(開始) --.

1. 생활이 어려운 통장(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낮은 순서)
2. 장기근속통장
3.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3년간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
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
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장학생은 각 통장별로 매년
연속하여 선발할 수 없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
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개시후 1개월 이
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
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
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
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②-----
-- 선발할 때 -----
--- 동 간-----
-----.

<삭 제>

제5조(장학생의 정원) -----
년간 ----- 15퍼센트 ---
----- 범위-----
-----.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학기 개시 후 -----

----- 한꺼번-----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정지) ①-----
----- 어느
하나-----

-----.

1. ----- 그 직에서 위

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측 해제가 되었을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지급 -----

인천광역시 서구 장학기금 특별회계-----
--.

②----- 인천광역시 서구-----
-.

제10조(규칙) -- 조례의 시행에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62호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6.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청구 서류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통장 신분확인서 제출 삭제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07. 0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093,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청구 서류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통장 신분확인서 제출 삭제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를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의”를 “학생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계기관장”을 “관계 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참고서류”를 “참고 서류”로 한다.

제3조 중 “(별지 제3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부터 7일이내”를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구금고”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제1조(목적) <u>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u></p> <p>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u>자의</u>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u>각호</u>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u>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u></p> <p>2. <u>기타</u> 심사에 필요한 <u>참고서류</u></p> <p>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p>	<p><u>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u></p> <p>제2조(장학금의 신청) ----- ----- <u>학생의</u> ----- ----- ----- ----- <u>각 호</u> ----- ----- -----.</p> <p>1. ----- ----- ----- <u>관</u> ----- <u>계 기관장</u> -----</p> <p>2. <u>그 밖의</u> ----- <u>참고 서</u> ----- <u>류</u></p> <p>제3조(추천) -----</p>

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급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선발) ①-----

 ----- 알려야 -----
 -.

②-----
 ----- 날부터 7일 이내-----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장학금의 지급) -----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

관계법령 발췌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